

화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4. 29

다. 상정일자 : 2003. 4. 29

(제11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산림과장 한 두 회

나. 제정사유

- 종전 가로수 관리지침(산림청 예규 제151호, 1977.1.21)이 관련 상위법 부제로 '98. 5. 21 폐지되어 구체적인 지침 없이 도로법에 의해 가로수가 관리되고 있었으나, 2001년 5월 24일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중에 하나인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다. 주요내용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방향을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 확보와 녹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로수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도록 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 가로수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규격, 식재기준 및 식재위치 등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가로수 조성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가로수의 생육을 원활하게 함.(안 제4조 내지 제10조)
- 쟁진,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점검등 가로수 관리와 관리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8조)
-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및 비관리형 공사 시행에 대한 협의사항을 규정(안 제19조 내지 제21조)
- 훼손자 및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 및 관리의 협의·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내지 제24조)
- 가로수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본 조례안은 녹색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부속물인 가로수의 손재자에 대한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로수가 전

선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무분별하게 가지치기를 시행했던 한국전력 등에도 협의토록하며, 도시녹지 조성에 이바지함은 물론, 환경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의 결"

7. 첨 부 :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화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녹화 및 도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의 저감 및 녹음의 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1.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는 제외한다)
2.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등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3. 면도, 이노, 농도등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4조에 의한 도로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② “관리처”이라 함은 산림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갱신”이라 함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④ “보식”이라 함은 농밀한 간격으로 심어진 곳의 가로수가 없거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농밀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⑤ “가로수 식수대”라 함은 가로수 보호틀과 가로수 보호덮개를 포함하여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하 “식수대”라 한다)을 말한다.

⑥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벼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⑦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의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의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식수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와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⑨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훼손이 예상되는 곳의 가로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⑩ 가로수의 각 부분 명칭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가로수관리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계획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등 현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가로수의 조성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식재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식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의 저감, 기후의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2과 같다.

제5조(식재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과 같으며 흡고직경 및 균원직경의 적용수목과 측정방법은 별표1의기준에 따르되 수목의 특성상 10%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지역에 식재할 교목(키큰나무)은 흡고직경 6센티미터 또는 균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
2.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식재할 교목은 흡고직경 8센티미터 또는 균원직경 10센티미터 이상
3. 도로 여건과 주변경관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식재 규격을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4.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 및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 관리정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식재의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의 폭원 등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 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길 어깨 끝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쪽등을 자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길 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2m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절토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비탈면에도 식재할 수 있다.
5. 기타 중앙분리대 등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 한다.

① 교목(기큰나무)

1.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 관목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선힘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정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도로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4.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② 관목(키작은나무)

1.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을 군식으로 식재하고, 동일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2개 수종 이상으로 혼식할 수 있다.

③ 기타

1.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

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충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2.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8조(식재제한지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 식재를 제한할 수 있다.

1. 커브길 또는 교차로로서 차량의 시계에 장애되는 구간
2. 수려한 자연 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3.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4.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 수고, 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제9조(식재의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0조(도로점용) 가로수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이 다른 경우의 가로수 식재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형식 및 절차는 도로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가로수 관리

제11조(갱신 및 보식) ① 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고사된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장애를 주는 가로수
 6. 재해와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입은 가로수
 7.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8.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가로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서재되어 있는 규격(크기)의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12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유지, 도로표지판 및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등을 위하여 가지치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지치기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 20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수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병해충의 방제) 병해충 발생 및 화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갱신·보식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②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⑤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가로수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수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방제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배연, 화학약품, 불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외과수술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형과 토양의 보호) ①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립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다.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라.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담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

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자가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의 도로표지판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자 등의 시야 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서로 겹쳐 질 경우가 있는 도로부속물,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이하 도로표지판"이라한다)등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고자 하는자는 식재된 가로수의 훼손 및 시야의 확보를 위하여 도로표지판 등의 형태변경등을 우선고려하여 가로수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도로표지판등의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이전상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하여 차폐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도로표지판등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등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지치기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지치기는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관수시설등 기로수 관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관리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설치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범위 안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공사의 시행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점검) ① 관리청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생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보식·생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의 발생신고

3.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의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의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모든 주민은 가로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로수 식재지 주변 불지르기 하는 행위
 2. 가로수 주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4.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5. 보호를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6.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 ③ 관리청은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로수의 외과수술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의 수목파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관리청이 아닌 자기 가로수의 식재, 이식, 세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훼손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예견되는 피해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훼손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3와 같다.

제23조(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가로수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의 위험 등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자로 하여금 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후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3와 같다.

제2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가산금·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가로수의 유지

제25조(가로수 관리대장)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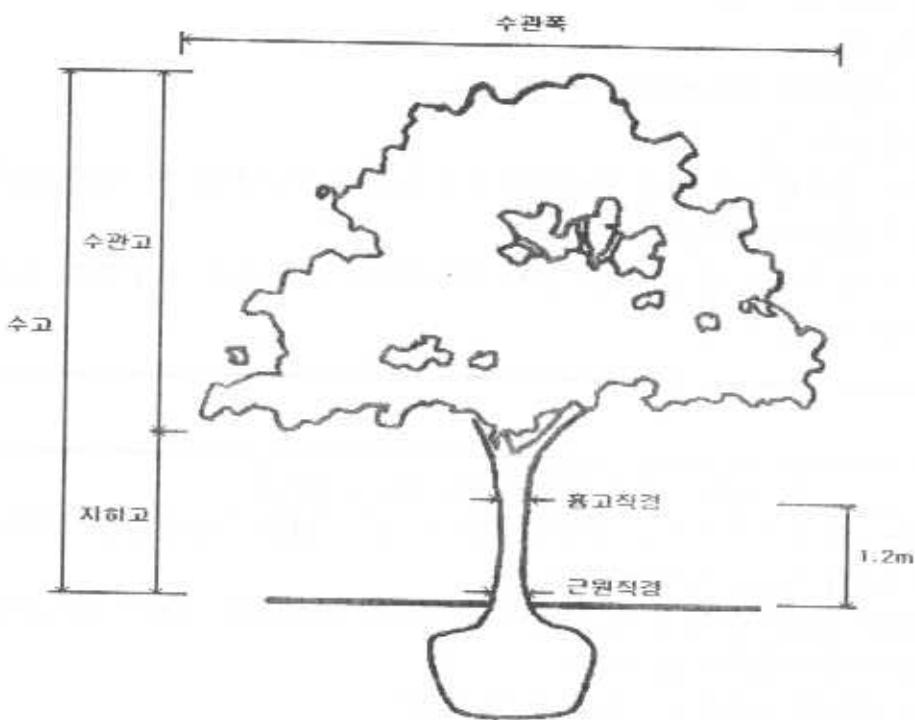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가로수의 각 부분의 명칭



- 수고(樹高) :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부에 둘출된 도장자는 제외한다.
- 수관고(樹冠高) : 역지 끝을 형성하는 쇠하단의 가지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쇠하단의 가지 대신 여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자하고(枝下高) : 지표면에서 역지(力枝) 끝을 형성하는 쇠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쇠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흉고직경(胸高直徑) : 지표면에서 1.2m 지점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의 줄기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줄기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 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으로 한다.
- 근원직경(根元直徑) :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줄기가 분기 하는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표면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 수관폭 : 타원형 수관은 최대증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쇠단과 쇠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여 도장자는 제외한다.

【별표 2】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

1. 수형이 정돈 되어 있는 것
2. 발유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에 발달되었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별표 3】

체손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체손자 부담금	1. 번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동일수종·규격으로 대체식재할 도급공사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 경우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3. 경미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약도의 가지치기 경우 : 수목비의 10% + 작업비
원인자 부담금	1.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도급공사비(이식) 나.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도급공사비(이식)를 예치
	2. 제거하는 경우 가.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수목비 및 도급공사비(제거) 나.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수목비
	3. 가지치기를 원하는 경우 : 도급공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 목 비 : 조달청 가격정보지 가격 적용,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가격정보지를 적용하고 이에도 없을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 적용 · 도급 공 사 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2호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 예치금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금예치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서 규정한 허자담보책임기간동안 예치 ·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4. 29

다. 상정일자 : 2003. 4. 29

(제1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건설과장 김용현

나. 개정사유

- 2002년 각종 기금의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하여 1개과 2개이상 기금은 1개로 통합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운용·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 체계를 도모코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 화순군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기금의 조성

- 재난관리법 제5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등

○ 기금의 운용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운용
-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그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 단,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사용 요인이 없을 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 대규모 재난 또는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기금의 관리

- 누적 잔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 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기금의 운용계획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화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금의 용도

-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 자연관리법시행령 제5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
- 재난예방 또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의 군 지원
-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화순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 회계공무원

-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 된다.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 위원은 재난 및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과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의 기능

-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기금이 결산에 관한 사항
- 재난관리기금의 융자 규모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결산 및 보고

-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각 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수와 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의 통합성 지혜 및 비 효율적 운영의 요소가 있어 2002. 1. 29일 시달된 각종 기금 통·폐합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폐합 조례로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첨 부 :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순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화순군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관리기금

- 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나. 기금의 운용수익금
- 다. 기타 수입금 등

2. 재해대책기금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나. 기금의 운용수익금
- 다.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운용) ①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 제1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정저립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그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한다. 단,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사용요인이 없을 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③대규모 재난 또는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충급복구비가 당해연도사업충당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누적잔액(매년 저립된 법정저립액과 발생한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액(이하 “장기 예치기금액”이라 한다)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장기예치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예치기금액은 화순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적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을 화순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2. 자연관리법시행령 제5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
 3. 재난예방 또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의 군 지원
- ②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화순군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 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서는 화순군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7조의 회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재난 및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기금의 융자 규모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화순군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다